

#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간행물 활용 가이드라인

## 1 간행물 신청

### ● 간행물이란?

- 간행물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물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책자, CD, 전자파일 형태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 ● 간행물 유형

지원 간행물 유형	연감백서류, 통계류, 업무편람,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용역보고서 포함), 교육자료, 기관지, 목록류, 연설강연집, 전시오감 화보집 등
-----------------	---

※ 제외자료 : 리플릿, 카달로그, 안내책자, 소식지, 포스터 등 8페이지 미만의 단순 홍보자료

### ● 간행물 자유이용허락 범위

-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간행물은 공공저작물로 「저작권법」 제24조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준(공공누리, KOGL)’을 표기하고 있어 이용조건 범위 안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준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출처표시+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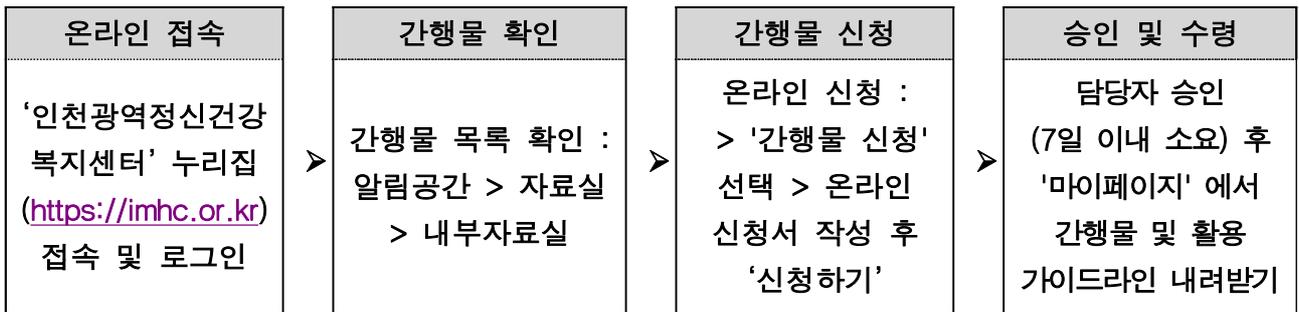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1)’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위 이용조건 범위 안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및 활용방법은 공공누리 포털 사이트([www.kogl.or.kr](http://www.kogl.or.kr)) 참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가 없는 간행물의 경우, 아래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본 기관의 이용허가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본 가이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 2 간행물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 간행물 활용 신청방법

- 본 기관의 간행물을 활용(출판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본 기관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및 간행물 활용 신청서를 작성·신청하며, 본 기관 승인 후 활용이 가능합니다.



### ❖ 간행물 신청 처리절차



※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활용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간행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차적으로 정정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후 타 기관에서 정정통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 기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3 간행물 활용방법2

#### ● 간행물 활용 범위

구분	내용
복제	- 본 기관의 간행물 원본을 훼손 없이 그대로 재출판 및 배포하는 경우 - 자료에 실린 내용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표, 기타 자료 등에 수정 및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
인용	- 본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참고로 활용하는 경우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여야 함 <sup>3)</sup> . (저작권법 제28조)
번안	- 본 기관 간행물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해당 기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 또는 변형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출판권을 양도한 경우)

#### ● 간행물을 그대로 복제 출판하는 경우

- 본 기관 간행물을 수정이나 변형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출판 및 배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본 기관 간행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 ❖ 간행물 이용허락범위

- 1) 원저작자의 표시
- 2) 영리적 목적의 사용 금지
- 3) 간행물의 제목, 내용 및 디자인 변경 금지
- 4) 타 기관이 제3자에게 재이용 허락 금지

- 신청 기관은 복제물에 대한 사전승인 문구를 지정한 곳에 반드시 포함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 ❖ 복제물 사전승인 문구 [참고1]

본 간행물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행한 자료로 해당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신청 기관명)에서 **재출판** 되었습니다.

본 간행물의 이용허락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적 목적의 사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2. 간행물에 적용된 디자인의 무단변경을 금합니다.
3. 간행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자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본 책자에 실린 그림, 사진, 기타 자료를 포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2)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간행물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함.  
3) 인용 조건 : 1. 인용하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어야 함.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이어야 함(연예, 오락, 광고, 홍보, 선전 등의 목적을 위한 인용은 비허용). 3.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가 되고, 피인용 저작물은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쓰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의 분량은 최소한도여야 하며,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감상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4. 피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함(문화재청(2014), 저작재산권 관리 매뉴얼).

❖ **삽입 위치**

- 1) 연구보고서 및 업무편람(매뉴얼, 지침서 등) : 간행물의 목차 뒷면 또는 목차 다음 페이지 중앙
- 2) 기타 간행물(소책자, 기관(소식)지, 교육자료 등) : 간행물의 앞표지 뒷면 하단

❖ **표지 및 판권지 표기 방법**

1) **신청 기관명을 인쇄처로 표기**

-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표지, 판권지 및 ISBN 번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출판을 원하는 신청 기관은 판권지 내에 ‘인쇄처’로 표기한다.

<p>(전체 표지디자인 변형 없이 적용)</p> <p><b>책 제목</b></p> <p>(로고)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변경 없이 그대로 기입</p>	<p><b>사전승인 문구 삽입</b></p> <p>[참고1] 복제물에 대한 사전승인 문구 참고</p>	<p><b>저작물명</b></p> <p>발행일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쇄처   신청 기관명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제작업체                    ISBN 그대로 유지</p>
표 지	내 지	판권지

2) **신청 기관명을 발행처로 표기**

-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판권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발행처에 신청 기관명을 기입하고 ISBN은 삭제, 판권지의 가장 위쪽에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원저임을 반드시 표기한다.

<p>(전체 표지디자인 변형 없이 적용)</p> <p><b>책 제목</b></p> <p>원저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발행</p> <p>(로고)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로고)신청 기관명</p>	<p><b>사전승인 문구 삽입</b></p> <p>[참고1] 복제물에 대한 사전승인 문구 참고</p>	<p><b>저작물명</b></p> <p>원저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최초발행연도)</p> <p>발행일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신청 기관명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제작업체                    ISBN (판권지에서 삭제)</p>
표 지	내 지	판권지

## ● 특정 단락, 문구 등을 발췌 인용하는 경우

- 특정 단락, 문구, 삽입 그림 등 어느 일정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1) 본문의 글을 인용하는 경우

- 인용 부분이 끝나는 문장 혹은 단락의 마지막에 표시하여야 하며, 참고문헌에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표기한다.

#### ❖ 표기 방법

1) 인용이 끝나는 문단 마지막 부분에 출처 표기

정신장애와 질환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거리감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론 및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언론사 및 관련 업체와의 협력관계 조성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나경세, 2020).

2) 참고문헌에 출처 표기

: 저자명(발행연도), 간행물 제목, 발행처, 시작페이지-마지막페이지

(\* 한 페이지만 있을 경우 시작페이지만 표기)

나경세(2020), 인천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정책 마련 기초연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3-34

### 2) 본문의 삽화, 사진, 표 등 기타 자료를 인용한 경우

- 인용한 자료의 바로 하단에 출처 표기

#### ❖ 표기 방법

그림, 사진, 표, 그래프 등 기타 자료

출처 : 나경세(2020), 인천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정책 마련 기초연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3

## ☐ 간행물의 전문 또는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는 경우

### 1) 신청 기관에서 자체 작성한 분량이 '주'인 경우

: 본 기관 간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 내용을 삽입 시, 본 기관 간행물에서 발췌한 부분과 신청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사전에 재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발췌한 내용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표기하여야 한다.

#### ❖ 재이용 사전승인 문구 [참고2]

본 간행물의 일부 내용은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행한 “책이름(서명)”에서 발췌하여 해당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재이용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본 책자에 실린 그림, 사진, 기타 자료를 포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 삽입 위치

- 1) 내용의 구분이 확실한 경우(예 : 부록)는 위의 사전승인 문구를 발췌가 시작되는 시점에 삽입
- 2) 본문 중에 본 기관 간행물의 전문 또는 발췌한 부분이 활용될 경우에는 각주로 표기

본 간행물의 일부 내용은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행한 “책이름(서명), 발행인(연도)”에서 발췌하여 해당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재이용하였습니다.

### 2) 본 기관 자료 분량이 '주'인 경우

-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신청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보다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간행물에서 재이용한 분량이 더 많고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신청 기관에서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간행물을 번안하여 출판하는 경우에 더 근접하므로 [간행물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번안하는 경우 : 본 기관에서 출판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 안내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 **간행물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변안** 출판하는 경우 : 본 기관에서 출판권을 양도한 경우**

- 신청 기관은 본 기관에서 지정한 페이지 하단에 명시한 원저작자 및 사전승인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여 인쇄하여야 한다(문구 삽입 위치는 복제물 경우와 동일).
-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이 없어야 한다.
  - 책 제목
  - 목차 구성 및 순서
  - 페이지 구성
  - 디자인 요소
  - 기타 각각의 장에 해당하는 구성 틀 및 순서

❖ **변안물 사전승인 문구 [참고3]**

본 간행물은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행한 자료로 해당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신청 기관명)에서 **변안 출판**되었습니다.

본 간행물의 이용허락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적 목적의 사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2. 간행물에 적용된 디자인의 무단변경을 금합니다.
3. 간행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자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본 책자에 실린 그림, 사진, 기타 자료를 포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표지 및 판권지 표기 방법**

- 기관명, 로고 및 판권지의 정보는 신청 기관에서 해당하는 내용으로 표기하며, 본 기관이 원저작자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지, 내지, 판권지에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p>(전체 표지디자인 변형 없이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b>책 제목</b></p> <p style="text-align: center;">원저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발행(신청 기관명)</p> <p style="text-align: center;">(로고)신청 기관명</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전승인 문구 삽입</b></p>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3] 변안물에 대한 사전승인 문구 참고</p>	<p><b>저작물명</b></p> <p>원저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최초발행연도)</p> <p>발행일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신청 기관명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제작업체   ISBN 신청 기관에서 발행한 도서번호</p>
<b>표 지</b>	<b>내 지</b>	<b>판 권 지</b>